

「경북·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공공위탁  
동의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6년 1월 5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6년 1월 6일

라. 상정일자: 2026년 1월 14일

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첨단산업국장 남 병 국

나. 제안이유

- 경북·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구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, 지역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간 기술교류 및 지원으로 지역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
- 경북·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의 전문적,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1) 사무명 : 경북·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
- 2) 추진근거 및 필요성
  - 가) 추진근거
    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   - (2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    - (3) 「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
    - (4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  - 나) 필요성 :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관련 축적된 경험을 지닌 전문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
- 3) 위탁 사무 내용 : 경북·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운영 업무 전반
  - 가) 반도체특화단지 기반구축 사업 추진
  - 나) 반도체산업 기업네트워크 지원 및 신규사업 발굴
  - 다) 지역 맞춤형 반도체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등
- 4)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 : 해당없음
- 5) 위탁기간 : 2026. 1. ~ 2026. 12.
- 6)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600백만원(도비 180, 시비 420)  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간접비	사업비	비고
600	271	30	299	

- 7)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2025년 구미시 반도체산업 공공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의(251231)
- 8) 위탁구분 : 재계약 (수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)
- 9) 부서의견
  - 가)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이후 「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

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」 제5조에 따라 경북·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산하에 설립되었음

나) 이에 따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조성 및 세부육성 계획 수립·추진 등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해당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

### 라. 참고사항

#### 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- 「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
-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#### ○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#### ○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

: 적정(2025년 구미시 반도체방산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)

#### ○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

: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(관련 조례 2026.1.1. 시행)

#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#### ○ 본 동의안은

-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북·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의 운영 및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」 제5조에 의거하여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산하에 ‘경북·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’ 을 2023년 10월 출범하였음.
-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반도체산업 관련 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북·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단을 운영하는 수탁기관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2023년 7월에 구미시가 반도체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,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추진단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및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·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